|  |  |  |
| --- | --- | --- |
|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재정장려자금 관리방법》 발부에 대한 통지**  財建 [2011] 36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원회(경제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경제정보위원회, 공업정보위원회, 공업정보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발전개혁위원회, 유관 중앙기업:  선진적인 에너지절약기술을 보급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시키고 "12.5" 기간에 단위당 국내생산총액의 에너지소비를 16%로 줄이는 강제적 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법》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2.5 규획요강》에 근거하여 중앙재정은 계속 특별자금을 마련하여 "장려로 보상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에너지절약 기술개조에 대해 적정하게 지원하고 장려를 한다. 재정자금의 관리를 보강하고 자금 사용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재정장려자금 관리방법》을 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1년 6월 21일  붙임: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재정장려자금**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2.5 규획요강》에 근거하여 선진적인 에너지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12.5"기간에 중앙재정은 계속 특별자금을 마련하여 "장려로 보상을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여 에너지절약 기술개조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장려(이하 장려자금이라 함)를 한다. 재정자금 관리를 보강하여 자금 사용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 방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프로젝트의 실제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장려자금은 에너지절약 량과 연결시켜 예상 목표를 완성한 프로젝트 수행단위에 장려를 한다.  **제3조** 장려자금은 공개, 투명 원칙을 실시하여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는다.  **제2장 장려 대상과 조건**  **제4조** 기존의 생산공정과 시설에 대해 에너지절약 기술개조를 실시한 프로젝트는 장려자금 지원대상으로 된다.  **제5조** 장려자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프로젝트는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승인 또는 비안(備案)을 해야 한다.  (2) 개조 주체는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동시에 3년 이상 운행되어야 한다.  (3) 에너지절약 량이 5,000톤(포함) 표준석탄 이상에 달해야 한다.  (4) 프로젝트단위의 개조전 연간 종합 에너지소비량이 2만톤 이상 표준석탄이어야 한다.  (5) 프로젝트단위에 완벽한 에너지계량, 통계 및 관리조치가 구비되어 있고 프로젝트로 형성된 에너지절약을 모니터링하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장려기준**  **제6조** 동부지역 에너지절약 기술개조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완공 후에 실현한 연간 에너지절약 량에 근거하여 240위안/톤 표준석탄 기준으로 1회적 장려를 하며, 중서부지역은 300위안/톤 표준석탄 기준으로 1회적 장려를 한다.  **제7조** 성급 재정부서는 일정한 경비를 배정하여 제3자 기구의 심사비용 등의 지급에 사용한다.  **제4장 장려자금의 신청과 조달**  **제8조** 조건에 부합되는 에너지절약 기술개조프로젝트는 프로젝트단위(중앙직속기업 포함)에서 법인대표의 서명을 받은 장려자금 신청보고서(구체 요구는 첨부 1 참조)를 프로젝트 소재지 에너지절약 주관부서와 재정부서에 제출한다. 성급 에너지절약 주관부서, 재정부서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프로젝트자금 신청보고에 대한 1차 심사를 실시한다. 성급 재정부서, 에너지절약 주관부서는 제3자 기구(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공포한 제3자 기구명단에서 선택)에 의뢰하여 1차 심사에 통과된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며, 제3자 기구는 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 량, 진실성 등 관련 상황에 대한 심사보고서(양식은 첨부 2 참조)를 제출한다.  **제9조** 성급 에너지절약 주관부서, 재정부서는 제3자 기구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프로젝트 자금신청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일괄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양식은 첨부 3 참조)에 보고한다.  **제10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지역에서 보고한 자금신청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재심사결과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실시계획을 하달하고 재정부는 프로젝트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장려금액의 60%에 따라 예산을 조달한다.  **제11조** 각급 재정부서는 국고관리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체 없이 프로젝트단위에 조달해야 한다.  **제12조** 지방 에너지절약 주관부서는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프로젝트의 시의적절한 완공을 독촉한다.  **제13조**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프로젝트단위는 지체 없이 소재지 재정부서와 에너지절약 주관부서에 결제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성급 재정부서는 에너지절약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제3자 기구를 동원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제3자 기구의 심사보고서(양식은 첨부 2 참조)에 근거하여 심사 일괄 후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장려자금(양식은 첨부 3 참조) 결제 신청을 제출한다.  **제14조**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제3자 기구에 의뢰하여 프로젝트의 실제 에너지절약 효과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며, 각 지역의 자금결제 신청과 제3자 기구의 표본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성급 재정부서와 자금청산을 진행한다. 성급 재정부서는 기업 장려자금의 조달 또는 회수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5장 심사기구 관리**  **제15조**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회동하여 제3자 기구에 대한 심사 비안(備案), 동태적 관리를 실시하며, 아울러 사회에 제3자 기구 명단을 공개한다.  **제16조**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안(備案) 명단에 편입된 제3자 기구는 각 지역의 위탁을 받고 독립적으로 현장 검사작업을 전개하며, 아울러 현자검사 과정과 제출한 검사보고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는다.  **제17조** 위탁 검사비용은 지역에서 재정성 투자평가심사비용과 위탁대리업무 보조비 지급 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8조** 지역에서 제3자 기구에 위탁 시에는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제3자 기구 및 그 심사요원은 최근 3년 내에 프로젝트단위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어야 한다.  (2) 프로젝트 시행 전, 후의 에너지절약 수량 심사업무는 원칙상 다른 제3자 기구에 위탁해야 한다.  (3) 실력이 강하고 프로젝트 검사경험이 풍부한 제3자 기구를 먼저 선임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19조** 지역 에너지절약 주관부서와 재정부서는 프로젝트 신청보고에 대한 1차 심사를 보강하고 아울러 프로젝트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책임을 진다. 프로젝트에 허위를 날조하거나 중복 보고 등의 국가자금 편취, 사취한 지역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소재지 에너지절약 재정장려 신청자격을 취소하며, 《재정 불법행위 처벌처분 조례》(국무원 령 제427호)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유관단위와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지역 에너지절약 주관부서와 재정부서는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감독 검사를 보강하여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프로젝트의 전반 시행진도가 완만하거나 예상 에너지절약 효과를 거두지 못한 지역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통보 비판한다.  **제21조** 프로젝트 신청단위는 사실대로 프로젝트 자료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건설하여 규정한 생산능력에 도달시켜야 한다.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단위에 대해 국가는 장려자금을 회수하고 "12.5" 기간 중앙의 예산내 및 에너지절약 재정장려 신청자격을 취소하며, 관련인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재정 장려자금을 사취한 경우  (2) 특별한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3)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장기간 에너지절약 효과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  (4)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도경으로 재정자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제22조**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회동하여 제3자 기구의 심사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심사보고서가 부실한 제3자 기구에 대해서는 통보 비판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당해 기구의 심사업무 자격을 취소하는 동시에 관련 인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23조** 이 방법은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해석한다.  **제24조** 이 방법은 인쇄 발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존의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재정장려자금 잠정방법》(財建 [2007] 371호)은 폐지한다.  첨부:  1. 기업 에너지절약 재정장려자금 신청보고서의 주요내용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10624/001e3741a2cc0f6e378401.doc>  2. ××××단위 ××프로젝트 현장심사보고서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10624/001e3741a2cc0f6e378802.doc>  3. \_\_\_\_\_\_년도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재정장려자금 신청일괄표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10624/001e3741a2cc0f6e378c03.xls> |  | **关于印发《节能技术改造财政**  **奖励资金管理办法》的通知**  财建〔2011〕367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发展改革委（经委、经贸委、经信委、工信委、工信厅），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发展改革委，有关中央企业：  　　为加快推广先进节能技术，提高能源利用效率，实现“十二五”期间单位国内生产总值能耗降低16%的约束性指标，根据《节约能源法》和《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中央财政将继续安排专项资金，采取“以奖代补”方式，对企业实施节能技术改造给予适当支持和奖励。为加强财政资金管理，提高资金使用效率，我们制定了《节能技术改造财政奖励资金管理办法》，请遵照执行。    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二〇一一年六月二十一日  附件：  **节能技术改造财政奖励资金**  **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为加快推广先进节能技术，提高能源利用效率，“十二五”期间，中央财政继续安排专项资金，采取“以奖代补”方式，对节能技术改造项目给予适当支持和奖励（以下简称奖励资金）。为加强财政资金管理，提高资金使用效率，特制定本办法。  **第二条**　为了保证节能技术改造项目的实际效果，奖励资金与节能量挂钩，对完成预期目标的项目承担单位给予奖励。  **第三条**　奖励资金实行公开、透明原则，接受社会各方面监督。  **第二章　奖励对象和条件**  **第四条**　奖励资金支持对象是对现有生产工艺和设备实施节能技术改造的项目。  **第五条**　申请奖励资金支持的节能技术改造项目必须符合下述条件：  　　（一）按照有关规定完成审批、核准或备案；  　　（二）改造主体符合国家产业政策，且运行时间3年以上；  　　（三）节能量在5000吨（含）标准煤以上；  　　（四）项目单位改造前年综合能源消费量在2万吨标准煤以上；  　　（五）项目单位具有完善的能源计量、统计和管理措施，项目形成的节能量可监测、可核实。  **第三章　奖励标准**  **第六条**　东部地区节能技术改造项目根据项目完工后实现的年节能量按240元/吨标准煤给予一次性奖励，中西部地区按300元/吨标准煤给予一次性奖励。  **第七条**　省级财政部门要安排一定经费，主要用于支付第三方机构审核费用等。  **第四章　奖励资金的申报和下达**  **第八条**　符合条件的节能技术改造项目，由项目单位（包括中央直属企业）提出奖励资金申请报告（具体要求见附1），并经法人代表签字后，报项目所在地节能主管部门和财政部门。省级节能主管部门、财政部门组织专家对项目资金申请报告进行初审；省级财政部门、节能主管部门委托第三方机构（必须在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公布的第三方机构名单内）对初审通过的项目进行现场审核，由第三方机构针对项目的节能量、真实性等相关情况出具审核报告（格式见附2）。  **第九条**　省级节能主管部门、财政部门根据第三方机构审核结果，将符合条件的项目资金申请报告和审核报告汇总后上报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格式见附3）。  **第十条**　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组织专家对地方上报的资金申请报告和审核报告进行复审，国家发展改革委根据复审结果下达项目实施计划，财政部根据项目实施计划按照奖励金额的60%下达预算。  **第十一条**　各级财政部门按照国库管理制度有关规定将资金及时拨付到项目单位。  **第十二条**　地方节能主管部门会同财政部门加强项目监管，督促项目按时完工。  **第十三条**　项目完工后，项目单位及时向所在地财政部门和节能主管部门提出清算申请，省级财政部门会同节能主管部门组织第三方机构对项目进行现场审核，并依据第三方机构出具的审核报告（格式见附2），审核汇总后向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申请清算奖励资金（格式见附3）。  **第十四条**　财政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委托第三方机构对项目实际节能效果进行抽查，根据各地资金清算申请和第三方机构抽查结果与省级财政部门进行清算，由省级财政部门负责拨付或扣回企业奖励资金。  **第五章　审核机构管理**  **第十五条**　财政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对第三方机构实行审查备案、动态管理，并向社会公布第三方机构名单。  **第十六条**　列入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备案名单的第三方机构接受各地方委托，独立开展现场审查工作，并对现场审查过程和出具的核查报告承担全部责任。同时接受社会各方监督。  **第十七条**　委托核查费用由地方参考财政性投资评审费用及委托代理业务补助费付费管理等有关规定支付。  **第十八条**　地方委托第三方机构必须坚持以下原则：  　　（一）第三方机构及其审核人员近三年内不得为项目单位提供过咨询服务。  　　（二）项目实施前、后的节能量审核工作原则上委托不同的第三方机构。  　　（三）优先选用实力强、审核项目经验丰富的第三方机构。  **第六章　监督管理**  **第十九条**　地方节能主管部门和财政部门要加大项目申报的初审核查力度，并对项目的真实性负审查责任。对存在项目弄虚作假、重复上报等骗取、套取国家资金的地区，取消项目所在地节能财政奖励申报资格。同时，按照《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国务院令第427号）规定，依法追究有关单位和人员责任。  **第二十条**　地方节能主管部门和财政部门要加强对项目实施的监督检查，对因工作不力造成项目整体实施进度较慢或未实现预期节能效果的地区，国家发展改革、财政部将给予通报批评。  **第二十一条**　项目申报单位须如实提供项目材料，并按计划建成达产。对有下列情形的项目单位，国家将扣回奖励资金，取消“十二五”期间中央预算内和节能财政奖励申报资格，并将追究相关人员的法律责任。  　　（一）提供虚假材料，虚报冒领财政奖励资金的；  　　（二）无特殊原因，未按计划实施项目的；  　　（三）项目实施完成后，长期不能实现节能效果的；  　　（四）同一项目多渠道重复申请财政资金的。  **第二十二条**　财政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对第三方机构的审核工作进行监管，对核查报告失真的第三方机构给予通报批评，情节严重的，取消该机构的审核工作资格，并追究相关人员的法律责任。  **第七章　附　则**  **第二十三条**　本办法由财政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负责解释。  **第二十四条**　本办法自印发之日起实施，原《节能技术改造财政奖励资金管理暂行办法》（财建〔2007〕371号）废止。  附：  1、企业财政节能奖励资金申请报告的主要内容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10624/001e3741a2cc0f6e378401.doc>    2、××××单位××项目现场审核报告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10624/001e3741a2cc0f6e378802.doc>    3、\_\_\_\_\_年度节能技术改造财政奖励资金申请汇总表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10624/001e3741a2cc0f6e378c03.xls> |